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구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게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나.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월동 난방비 지원 법적 근거 확보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월동 난방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액(안 제3조～제4조)

다. 월동 난방비 지원개시(안 제5조)

라. 월동 난방비 지원제외, 환수조치, 대상자 관리(안 제6조～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9조에 근거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동 난방비(이하 “난방비”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3. “월동 난방비”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동절기”라 함은 1월, 2월, 3월, 11월, 12월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난방비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속한 재가 가구로 주민등록상 가구 단위로 지원한다.

제4조(지원기간 및 지원액) ① 난방비는 동절기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가구당 매월 5만원을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개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며, 이때 결정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책정일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결정일이 된다.

제6조(지원제외)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 중 해당사항이 생길 경우 익월부터 지원 중지한다.

1. 보장시설수급자
2. 중증장애인의 3개월 이상 장기 부재 시
3. 중증장애인의 관외 전출, 사망, 주민등록 말소 시
4. 중증장애인의 수급자 중지 또는 장애정도 결정변경 등 자격변동 시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즉시 지원을 중지하고 난방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 및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난방비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 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 명부

일련번호	지원대상자						지급일	지급계좌번호			비 고 (기존/신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명 (생계/의료)	장애유형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 ③ 생략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게 난방비 25만원(월5만원씩 5개월) 지원으로 비용 발생 (1차년도 11월, 12월분만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구미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속한 가구 수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연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150	375	387	400	412	1,724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연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150	375	387	400	412	1,724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150	375	387	400	412	1,724

5. 부대의견 : 전입·전출, 사망 등으로 인원 및 비용은 변동 될 수 있으며, 수급자 책정 및 장애인 수 증가에 따라 대상 가구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6.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유민주(☎480-517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연간/백만원)

구분 \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인 원(명)	1,500	1,500	1,550	1,600	1,650	7,800
비 용(시비)	150	375	387	400	412	1,724

※ 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소 관 부 서		노인장애인과
입	과 장	박 영 희
안	담 당	오 은 주
자	담 당 자	유 민 주 (480-5172)